

【일련번호 : 1】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문책·경고요구 및 시정요구

제 목 정년 초과 근무 등 인사관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경상남도☺☺♥♥협회  
조 치 기 관 경상남도☺☺♥♥협회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경상남도☺☺♥♥협회는 「(사)한국☺☺♥♥협회 인사규정」에 따라 1977년 부터 직원 2명을 채용하였고 2016년에 직원 2명을 신규로 채용하였다.

[표] 종사자 채용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채용일	근무기간
%%%	'55.**.**	'77.06.01.	'77.06.01. ~
@@@	'76.**.**	'97.11.01.	'97.11.01. ~
###	'90.**.**	'15.01.01.	'15.01.01.~'15.04.03.
\$\$\$	'88.**.**	'15.04.06.	'15.04.06.~'16.03.31.

※자료 : 경상남도☺☺♥♥협회 제출자료 재구성

### 2. 정년초과 근무 부적정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한국☺☺♥♥협회 인사위원회 규정」 제45조에 따르면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단 본회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년을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최고 5년,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경상남도☺☺♥♥협회에서는 직원의 정년이 60세에 도달하기 이전에 한국☺☺♥♥협회 인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정년을 연장하고 근무토록 하여 임금을 지급했어야 했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경상남도☺☺♥♥협회에서는 현재 재직하고 있는 사무국장 %%%(55.\*\*.\*\*\*)이 정년에 도달하였지만 감사일 현재 까지 한국☺☺♥♥협회 인사위원회 심의 등을 통하여 정년연장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2016. 1. 1. 부터 2018. 6.30.까지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무국장 %%%에게 아래 [표1] 같이 총 123,980천원의 인건비와 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1] 인건비 및 수당 부적정 지급 내역

구분	지급기간	지급금액(천원)	재원
<b>계</b>		<b>123,980</b>	
급여 (보조금)	소계	<b>94,480</b>	보조금
	2016. 1~2016.12	37,392	
	2017. 1~2017.12	37,392	
	2018. 1~2018.6	18,69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소계	<b>6,500</b>	민간
	2016. 1~2016.12	2,600	
	2017. 1~2017.12	2,600	
	2018. 1~2018.6	1,300	
급여 (협회비)	소계	<b>24,000</b>	민간
	2014. 1 ~2014. 5.	9,600	
	2017. 1 ~2017.12.	9,600	
	2018. 1 ~2018. 2	4,800	

※자료 : 경상남도☺☺♥♥협회 제출자료 재구성

**3. 근로계약 미체결**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근로기준법」 제2조에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며,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근로계약 체결 후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으며,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사)한국☺☺♥♥협회 인사위원회 규정」 제20조에 따르면 직원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구두나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법, 소정근로시간 등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추가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경상남도☺☺♥♥협회는 직원 채용 후 근로계약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이에 따라 임금을 지급했어야 했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이번 감사기간 동안 2015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직원 채용실태를 확인한 결과, 경상남도☺☺♥♥협회에서는 아래 [표2] 와 같이 기 채용한 직원과 신규 직원을 채용하면서 「근로기준법」 및 「(사)한국☺☺♥♥협회 인사위원회 규정」에 규정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그 결과 경상남도☺☺♥♥협회에서는 임금 지급의 근거가 되는 근로계약 체결 없이 총 4명의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등 부당하게 인사관리를 한 사실이 있다.

[표2] 근로계약서 미작성 현황

성명	생년월일	채용일	근무기간
%%%	'55.**.**	'77.06.01.	'77.06.01. ~
@@@	'76.**.**	'97.11.01.	'97.11.01. ~
###	'90.**.**	'15.01.01.	'15.01.01.~'15.04.03.
\$\$\$	'88.**.**	'15.04.06.	'15.04.06.~'16.03.31.

※자료 : 경상남도☺☺♥♥협회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경상남도☺☺♥♥협회장은**

- ① 정년초과자를 근무하게 하는 등 인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경상남도☺☺♥♥협회 감독책임자 &&&, ㉮㉮㉮과 실무담당자 @@@을 한국☺☺♥♥협회 「인사위원회 규정」 제41조에 따라 「경고」 조치하고, 실무책임자 %%%은 한국☺☺♥♥협회 「인사위원회 규정」 제35조에 따라 「징계」 조치 후 그 결과를 통보 바랍니다.(징계, 경고)
- ② 또한,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국장 %%%에 대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고,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 협회장과 경상남도☺☺♥♥협회에 직원 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 2】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경고·시정요구

제 목 전국시설아동 축구대회 보조금 집행 부적정  
 소 관 기 관 경상남도☺☺♥♥협회  
 조 치 기 관 경상남도☺☺♥♥협회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경상남도☺☺♥♥협회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표]와 같이 전국시설아동 축구대회 참가 보조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보조사업 추진현황

(단위 : 천원, 명)

사업명	사업기간 (대회기간)	장소	참가 인원	사업비		
				계	도비	자부담
계				52,704	30,000	22,704
2015 전국시설아동 축구대회 참가	2015.7.28.~8.28. (2015.8.25.~8.28.)	▣▣▣ 강변축구장	22	27,949	10,000	17,949
2016 전국시설아동 축구대회 참가	2016.8.19.~9.2. (2016.8.30.~9.2.)	▣▣▣ 알뜰축구경기장	24	12,973	10,000	2,973
2017 전국시설아동 축구대회 참가	2017.7.26.~9.8. (2017.9.5.~9.8.)	●▣▣ 축구공원	24	11,782	10,000	1,782

※자료 : 경상남도☺☺♥♥협회 제출자료 재구성

### 2. 사례금 소득세 원천징수 미이행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전국시설아동 축구대회 참가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르면 보조금 집행 시 기타 관계법령 및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한국☺☺♥♥협회 예산회계규정」 제2조에 따르면 중앙협회 및 지방협회의 회계에 관한 업무는 관계법령 등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소득세법」 제4조, 제21조에 따르면 사례금,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등은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르면 그 필요경비를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84조, 제128조, 제129조에 따르면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도를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소득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 10일 까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고, 지방세법에 의거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보조사업자의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35조에 따르면 사례금 등 접대비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며 소득금액 5만원 초과 시 과세토록 되어 있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경상남도☺☺♥♥협회에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시설아동 축구대회에 참가하면서 사전훈련 및 대회 기간동안 수고비 명목으로 감독, 코치 등에게 [표 1]과 같이 사례금 지급 시 이에 대한 소득세(4%) 및 지방소득세(0.4%)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 1] 사례금 소득세 원천징수 미이행 현황

(단위 : 원)

연도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액	원천징수 미부과 금액		부과기준금액
				소득세	지방소득세	
계			6,280,000	249,200	24,920	
2015	사례금	감독(&&&)	1,500,000	60,000	6,000	5만원 초과
		코치(@@@)	500,000	20,000	2,000	
		코치보조(###)	150,000	6,000	600	
2016	사례금	감독(&&&)	1,500,000	60,000	6,000	
		코치(\$\$\$)	500,000	20,000	2,000	
		코치보조(%%%)	80,000	3,200	320	
2017	사례금	감독(&&&)	1,500,000	60,000	6,000	
		코치(●●●)	500,000	20,000	2,000	
		코치보조(■□■)	50,000	-	-	

※ 자료 : 경상남도☺☺♥♥협회 제출자료 재구성

### 3. 예비비 편성 및 집행 부적정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전국시설아동 축구대회 참가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르면 보조금 집행 시 기타 관계법령 및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한국☺☺♥♥협회 예산회계규정」 제2조에 따르면 중앙협회 및 지방협회의 회계에 관한 업무는 관계법령 등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토록 되어 있다.

또한 「한국☺☺♥♥협회 예산회계 규정」 제15조에 따르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집행 또는 추가집행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조사업에 대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없으므로 일반예산 항목으로 편성하여 집행했어야 했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경상남도☺☺♥♥협회에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반복된 행사인 전국시설아동 축구대회에 참가하면서 [표 2]와 같이 보조사업비 내 출장비, 세탁비, 사진현상료 등 일반경비는 사전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 사업계획 수립 시 일반수용비, 출장비 항목으로 예산편성하여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야 함에도 예비비로 편성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표 2] 보조사업비 내 예비비 편성 및 집행 현황

(단위 : 원)

연도	편성과목	사용용도	집행액	비고
계			318,050	
2015	예비비	출장비, 사진현상료	72,400	
2016	예비비	출장비, 세탁비, 사진현상료	164,550	
2017	예비비	출장비, 세탁비,	81,100	

※자료 : 경상남도☺☺♥♥협회 제출자료 재구성

#### 4. 도비 보조금 집행 부적정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전국시설아동 축구대회 참가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르면 보조금 집행 시 기타 관계법령 및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한국☺☺♥♥협회 예산회계규정」 제2조에 따르면 중앙협회 및 지방협회의 회계에 관한 업무는 관계법령 등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5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1조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안부 예규)」에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 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용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등)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경상남도☺☺♥♥협회에서는 2016년 전국시설아동 축구대회 종합우승 3위 시상금 478천원을 대회 주최측으로부터 수령하여 선수들에게 지급하면서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에 맞게 지출하여야하고 보조사업내용 변경 및 보조사업비 초과 집행 등이 예상 될 경우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아래 [표 3]과 같이 사업내용 및 예산 배분의 변경승인없이 감독, 코치에게 시상금을 초과 집행하는 등 행사목적에 맞지 않게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또한 축구대회 참가사업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축구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인솔자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용하여야 할 행사비(식대, 간식비)를 아래 [표 4]와 같이 외부 손님 접대비용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2015년 축구대회에서는 임차버스 추가 운행에 따라 발생한 추가운임을 임대차 계약 변경없이 기사수고비 명목으로 현금 지급하는 등 용도에 맞지 않게 집행하였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 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sup>1)</sup>를 제외하고는 전용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지만 아래 [표 5]와 같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집행한 사실이 있다.

[표 3] 사업내용 및 예산배분 미승인 현황

(단위 : 원)

사업연도	지출항목	용도	예산액(시상금)	집행금액	부적정 내용
2016	시상금	종합우승 3위 시상금	478,000	728,000	감독, 코치에게 시상금 250천원을 변경승인없이 초과집행

※자료 : 경상남도☺☺♥♥협회 제출자료 재구성

[표 4] 사업비 용도 외 사용 현황

(단위 : 원)

사업연도	지출일자	지출항목	사용내역	집행금액	부적정 내용
계			10건	764,100	
2015	'15. 8.17.	행사비(식대)	합숙훈련 격려비용(식사, 차)	229,000	업무추진비 용도
	'15. 8.27.	행사비(차량임차비)	기사수고비	150,000	지급근거 없음(현금지급)
2016	'16. 8.25.	행사비(식대)	합숙훈련 격려비용(식사, 음료수)	245,000	업무추진비 용도
	'16. 8.31.	행사비(간식비)	손님 접대비용(커피)	13,500	업무추진비 용도
	'16. 9. 1.	행사비(간식비)	시설장 모임(커피)	35,000	업무추진비 용도
2017	'17. 9. 5.	행사비(식대)	손님 및 직원 식대	33,000	업무추진비, 출장비 용도
	'17. 9. 5.	행사비(간식비)	손님 접대비용(커피)	25,500	업무추진비 용도
	'17. 9. 6.	행사비(간식비)	손님 접대비용(커피)	9,700	업무추진비 용도
	'17. 9. 7.	행사비(간식비)	손님 접대비용(커피)	13,200	업무추진비 용도
	'17. 9. 8.	행사비(간식비)	손님 접대비용(커피)	10,200	업무추진비 용도

※자료 : 경상남도☺☺♥♥협회 제출자료 재구성

[표 5] 보조금 전용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미사용 현황

(단위 : 원)

사업연도	지출일	집행금액	사용내역	비고
계		5,265,000		
2015	'15. 8.21.	1,760,000	차량임차비	계좌이체
	'15. 8.25.	150,000	차량임차비(추가운임)	세금계산서 미발급
2016	'16. 8.25.	1,815,000	차량임차비	계좌이체
2017	'17. 8.31.	1,540,000	차량임차비	계좌이체

※자료 : 경상남도☺☺♥♥협회 제출자료 재구성

1) 신용카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 출장 현지에서 신용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조치할 사항 경상남도☺☺♥♥협회장은

- 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시설아동 축구대회 보조금 집행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실무책임자 %%%과 실무담당자 @@@에 대하여 한국☺☺♥♥협회 「인사위원회 규정」 제41조에 따라 「경고」 조치 바랍니다.(경고)
  
- ②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시설아동 축구대회 참석한 감독, 코치에게 지급한 사례금 중 원천징수 미부과 금액 274,120원을 「부과」 조치하고, 전국시설아동 축구대회 행사목적에 맞지 않게 손님 접대비용으로 사용한 보조금 140,100원을 「회수」 조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 3】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경고·시정요구

제 목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전문상담 교육 보조금 집행 부적정  
 소 관 기 관 경상남도☺☺♥♥협회  
 조 치 기 관 경상남도☺☺♥♥협회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경상남도☺☺♥♥협회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표]와 같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전문상담 교육 보조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보조사업 추진현황

(단위 : 명, 천원)

사업명	일시	장소	참가 인원	사업비		
				계	도비	자부담
계				15,885	15,000	885
2015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전문상담 교육	2015.12. 2.(수) (11:30~16:30)	♠♠인터내셔널 호텔	220	5,880	5,000	880
2016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전문상담 교육	2016.12. 9.(금) (11:30~15:30)	♠♠인터내셔널 호텔	150	5,004	5,000	4
2017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전문상담 교육	2017.12.19.(화) (11:30~15:30)	♠♠인터내셔널 호텔	150	5,001	5,000	1

※자료 : 경상남도☺☺♥♥협회 제출자료 재구성

### 2. 예비비 편성 및 집행 부적정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전문상담 교육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르면 보조금 집행 시 기타 관계법령 및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한국☺☺♥♥협회 예산회계규정」 제2조에 따르면 중앙협회 및 지방협회의 회계에 관한 업무는 관계법령 등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토록 되어 있다.

또한 「한국☺☺♥♥협회 예산회계 규정」 제15조에 따르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집행 또는 추가집행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조사업에 대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없으므로 일반예산 항목으로 편성하여 집행했어야 했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경상남도☺☺♥♥협회에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반복된 행사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전문상담 교육사업을 추진하면서 [표 1]과 같이 사무비, 사진현상료, 출장비 등 일반경비는 사전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 사업계획 수립 시 일반수용비, 출장비 항목으로 예산편성하여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야 함에도 예비비로 편성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표 1] 보조사업비 내 예비비 편성 및 집행 현황

(단위 : 원)

연도	편성과목	사용용도	집행액	비고
계			111,300	
2015	예비비	사무비, 사진현상료	37,900	
2016	예비비	사진현상료 등	8,900	
2017	예비비	택시비, 사진현상료	64,500	

※자료 : 경상남도☺☺♥♥협회 제출자료 재구성

### 3. 강사료 과다 지급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전문상담 교육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르면 보조금 집행 시 기타 관계법령 및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한국☺☺♥♥협회 예산회계규정」 제2조에 따르면 중앙협회 및 지방협회의 회계에 관한 업무는 관계법령 등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에 따르면 강사료·원고료·출장여비 등 자치단체가 적용하는 공통기준을 보조사업자에게 제시하여 동일 자치단체내에서 지급단가를 통일하되,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다르게 기준을 제시한 경우에는 예외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또한 「한국☺☺♥♥협회 운영규정」 17. 강사비 및 기타경비 지급규정 제3조에 따르면 강사비 및 기타경비를 지급할 때에는 [별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강사비 및 기타경비 지급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경상남도☺☺♥♥협회에서는 2016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전문상담 교육을 실시하면서 유명예술인 및 종교인은 1급 강사로 책정하고 강사비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표 2]와 같이 원거리 등으로 강사초빙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기준에 맞지 않게 특급강사로 상향조정하여 강사비를 과다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 2] 강사비 과다지급 현황

(단위 : 원)

연도	강의시간	강사명	정상지급액	실지급액	과다지급액	비고
2016	'16.12. 9. 13:20~15:20(2시간)	♠♣♠ (♣유방송대학 이사, 유명 종교인)	400,000	500,000	100,000	대전

※자료 : 경상남도☺☺♥♥협회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강사비 지급기준표(한국☺☺♥♥협회 운영규정)

항목	기준	사용한도	비고
강 사 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현직 장/차관(급) 이상</li> <li>· 전/현직 대학총장(급)</li> <li>· 전/현직 국회의원</li> <li>· 대기업 총수(회장) 또는 국영기업체장</li> <li>·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로 본 협회가 인정하는 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시간 300,000원</li> <li>· 초과 매시간당 200,000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 조교수 이상,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li> <li>· 인간문화재, 유명예술인 및 종교인</li> <li>· 정부출연 연구기관장</li> <li>· 기업/기관 등의 책임급 연구원, 중역</li> <li>· 판/검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시간 250,000원</li> <li>· 초과 매시간당 150,000원</li> </ul>	

※자료 : 경상남도☺☺♥♥협회 제출자료 재구성

#### 4. 도비 보조금 집행 부적정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전문상담 교육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르면 보조금 집행 시 기타 관계법령 및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한국☺☺♥♥협회 예산회계규정」 제2조에 따르면 중앙협회 및 지방협회의 회계에 관한 업무는 관계법령 등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5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1조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안부 예규)」에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 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용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등)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경상남도☺☺♥♥협회에서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사업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행사용도로 사용하여야 할 간식비를 [표 3]과 같이 외부 손님 접대비용으로 용도에 맞지 않게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또한 보조금 집행 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sup>2)</sup>를 제외하고는 전용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지만 아래 [표 4]와 같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집행한 사실이 있다.

[표 3] 사업비 용도 외 사용 현황

(단위 : 원)

사업연도	지출일자	지출항목	사용내역	집행금액	부적정 내용
계			2건	128,000	
2016	'16.12. 9.	행사비(간식비)	회장단, 강사 접대비용 (커피, 차)	80,000	업무추진비 용도
2017	'17.12.17.	행사비(간식비)	시설장 접대비용 (커피, 차)	48,000	업무추진비 용도

※ 자료 : 경상남도☺☺♥♥협회 제출자료 재구성

2) 신용카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 출장 현지에서 신용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표 4] 보조금 전용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미사용 현황

(단위 : 원)

사업연도	지출일	집행금액	사용내역	비고
2017	'17.12.21.	33,000	행사용 배너 제작	계좌이체

※자료 : 경상남도☺☺♥♥협회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경상남도☺☺♥♥협회장은**

- 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전문상담 교육 보조금 집행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실무책임자 %%%과 실무담당자 @@@에 대하여 한국☺☺♥♥협회 「인사위원회 규정」 제41조에 따라 「경고」 조치 바랍니다.(경고)
- ② 또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전문상담 교육 행사목적에 맞지 않게 손님 접대비용으로 사용한 보조금 128,000원을 「회수」 조치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